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27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 . 4 . 23 .

발 의 자 : 산업건설위원장

유광용의원외 3인

□ 수정이유

- 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“새마을소득금고”와 “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”을 일원화시키고 조례 운영상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인바
- 상환기간 및 대부이율, 융자대상사업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함.

□ 수정 주요골자

- 융자 대상사업에 “기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”을 포함시키어 융자대상사업 및 수혜자 폭을 확대하여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코자 함.(안 제4조)
-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융자대상사업에 대하여 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”을 “해당 학교장의 추천”으로 수정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토록 함.(안 제5조)
- 융자 이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년 3%로 하향조정하여 당초 본 사업의 목적과 같이 저소득층 가구 또는 생산성이 높은 사업 부문에 대한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날로 어려움이 커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함.(안 제7조)
- 대부기간을 신설하여 융자 대상사업별 자금회전의 장단기적 성격 및 사업의 내용을 감안하여 동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. (안 제7조의 2)
-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현행 예산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예산서와 같이 부합시킴. (안 제17조)
- 기타 불합리한 자구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가함. 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20조)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“농어촌지역”과 “농어가”를 삭제한다.

안 제3조제1항중 “제5조규정에 의한”을 “새마을 소득사업”으로 하고 “제12조
규정에 의한”을 삭제한다.

안 제4조중 “성공이 확실하고”를 삭제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

안 제5조제1항4호중 “또는 지역 1명품”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“이울 등”을
삭제하며 동조동항1호중 “농업계”를 “실업계”로, 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”을
“해당 학교장”으로 하고 “영농의” 및 “(1인당 500만원이하)”를 삭제하며 동
조동항2호중 “1읍면 1특화사업 참여” 및 “(1읍면당 1억원이하)”를 삭제한다.

안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안 제6조제1항2호중 “또는 지역 1명품으”를 삭제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“읍자한도 및 이울등”을 “읍자한도 및 이울”로 하고 동조제1
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5조제2항의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동조동항의 특별
지원사업중 1호의 사업은 1인당 오백만원이하로, 2호의 사업은 1읍면동당 1
억원이하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중 “년 5퍼센트”에서 “년 3퍼센트”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.

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 2 (대부기간)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단기성 사업자금 : 1년거치 2년이내
2. 중기성 사업자금 : 2년거치 3년이내
3. 장기성 사업자금 : 3년 내지 5년거치 3년이내 상환

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1. 단기성 사업 :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
2. 중기성 사업 :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
3. 장기성 사업 : 사업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

안 제8조제1항중 “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”를 “읍면동장을 경유하여”로 한다.

안 제17조제2항중 “융자금” 다음에 “및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”를 삽입한다.

안 제20조2호중 “제14조”를 “제15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	수정사유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어가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 (목적) ----- <u>주민의 소득수준</u> ----- ----- -----	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 및 제12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연기 등 중요한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	제3조 (위원회의 설치) ① <u>새마을 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및</u> ----- ----- ----- -----	
제4조 (융자대상사업)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<u>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.</u> (신 설)	제4조 (융자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 <u>사업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.</u> <u>3. 기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</u>	
제5조 (융자대상) ① (생 략) 1~3 (생 략) 4. <u>지역특산품 또는 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, 마을 및 단체</u>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융자금의 규모 이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.</u> 1. <u>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자 (1인당 500만원이하)</u>	제5조 (융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1~3 (현행과 같음) 4. <u>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</u> ----- ----- ② ----- <u>융자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</u> ----- 1. <u>실업계 -----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</u>	

개 정 안	수 정 안	수정사유
2.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<u>육성발전시키기 위한 1읍면 1특화사업 참여마을 및 단체 (1읍면당 1억원이하)</u> ③ (생 략)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읍자 대상 가구, 마을 및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조사·보고하게 할 수 있다. 제6조 (읍자지원 우선 순위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<u>지역특산물 또는 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</u> 제7조 (읍자한도 및 이율등) ① 읍자한도액은 마을 및 단체당 5천만원,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<u>다만, 제5조제2항의 특별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.</u> ② 읍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5퍼센트로 한다. <u>다만, 제5조제2항의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년 3퍼센트 한다.</u>	2. ----- ----- <u>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마을단체</u> ③ (현행과 같음) (삭 제) 제6조 (읍자지원 우선 순위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</u> 제7조 (읍자한도 및 이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, <u>다만, 제5조제2항의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동조동항의 특별지원사업중 1호의 사업은 1인당 5백만원이하로, 2호의 사업은 1읍면동당 1억원이하로 한다.</u> ② <u>읍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퍼센트로 한다. (단서 삭제)</u>	

개 정 안	수 정 안	수정사유
③ <u>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으로 한다.</u> (신 설)	(삭 제) 제7조의 2 (대부기간)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 1. 단기성 사업자금 : 1년거치 2년 이내 2. 중기성 사업자금 : 2년거치 3년 이내 3. 장기성 사업자금 : 3년 내지 5년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 1. 단기성 사업 :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. 중기성 사업 :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 3. 장기성 사업 :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	
제8조 (융자금의 대부신청)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, 마을 및 단체 (이하 “대부신청자”라 한다)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<u>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</u>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8조 (융자금의 대부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</u> --- -----	
제17조 (세입·세출) ① (생략)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위한 <u>융자금</u>으로 한다.	제17조 (세입·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융자금 및 자금운영관리</u>를 위한 경상경비로 한다.	
제20조 (채납처분) (생략) 1. (생략) 2. <u>제14조</u> 규정에 -----	제20조 (채납처분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15조</u> 규정에 -----	